#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40 발의연월일: 2025. 1. 24.

발 의 자: 박상혁·정일영·김용만

박홍근 • 박용갑 • 한민수

김주영 · 박희승 · 이연희

임광현 • 박균택 • 염태영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을 선포한 경우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는 중대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의 요건이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계엄의 선포·시행에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먼저, 계엄 선포 요건 중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전시나 무장폭동이 아닌 비무장 시위나 소요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계엄선포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음. 또한, 계엄 선포 시 전군

(全軍)이 계엄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엄군은 별도로 편성되어야 함에도, 12.3 비상계엄에서는 집권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육군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 외에 특수부대인 HIID까지 마구잡이로 투입하면서 그 규모와 종류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음. 이에 더해, 계엄군에 대한 지휘는 '군령'의 영역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12.3 비상계엄에서는 군령권이 없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됨에 따라 계엄 선포 이후 합참의장, 국방장관으로부터 병력 출동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등 지휘체계에 혼선이 빚어졌고 국가비상사대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아니라 집권자의 자의에 따라 임명되었다는 비판을 받았음.

이에 비상계엄 선포 중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관한 요건을 구체 화하고, 국회에 대한 계엄 선포 통고 시 계엄사령부나 계엄군에 관한 사항을 함께 통고하도록 하며, 계엄사령관은 군인 중 최고 서열자인 합동참모의장이 되도록 함으로써 계엄 선포의 남용 및 정치적 이용을 방지하고, 계엄 시행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등). 법률 제 호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를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군경에 준하는 무장력이 수반된 소요나 반란에 대응하여"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국회 통고 시 계엄사령부의 설치 및 계 엄군에 투입되는 부대별 규모에 관한 사항을 함께 통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계엄사령관의 임명"을 "계엄사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를 "합동참모의장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합동참모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②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			
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			
히 곤란한 경우에 <u>군사상 필요</u>			
<u>에 따르거나</u> 공공의 안녕질서	따르거나 군경에 준하는 무장		
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력이 수반된 소요나 반란에 대		
	<u>응하여</u>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생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현		
략)	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국		
	회 통고 시 계엄사령부의 설치		
	및 계엄군에 투입되는 부대별		
	규모에 관한 사항을 함께 통고		
	<u>하여야 한다.</u>		
② (생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제5조( <u>계엄사령관의 임명</u> 및 계	제5조( <u>계엄사령관</u> 및 계엄사령부		
엄사령부의 설치 등) ① 계엄	의 설치 등) ①		

사령관은 <u>현역 장성급(將星級)</u>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
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
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단서 신설>
② ~ ④ (생 략)

합동참모의장으로 한다. 다만, 합동참모의장이 부득이한 사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 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